

책 469호

1974.11.2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896 호 :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3

◎ 규 칙

제 1416 호 :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
포한다.

1974. 11. 28

서울특별시장 구 자준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896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11 조 제 3 항 제 1 호중 "5원"을
"10원"으로하고, 제 2 호중 "500원"
을 "1,000원"으로 한다.

제 12 조 제 5 항중 "1,000원"을 "2,000
원"으로하고, "500원"을 "1,000원"으
로 한다.

제 13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③ 구정 75% 이상의 배수관을 개인
또는 다수인의 부담으로 부설하였
을 때에는 추후 당해 배수관에서 분
기하는자로 하여금 분담 상환제할
수 있으며 그범위와 방법등에 관하

여는 급칙으로 정한다.

제 14 조 제 1 항중 "300원"을 "600원"
으로 하고, "1,000원"을 "2,000원"으
로 한다.

제 16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② 2 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
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
설치하는 경우 가입금은 각호별로
산정한다.

제 23 조 제 3 항중 "150원"을 "300원"
으로, "300원"을 "600원"으로하고,
"1,000원"을 "2,000원"으로 한다

제 33 조 제 1 항중 "급수사무료와 동
시에"를 삭제한다.

제 39 조 제 2 항중 "300원"을 "1,000
원"으로 한다.

제 41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정
하여 가입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
하여는 그징수를 면한 금액의 5 배
이내의 부과를 부과할 수 있다.
별표제 2 호 및 제 3 호를 각각 별지
와 같이 한다.

부 칙 ①(시행일)이 조례는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(2)(경과조치) 다만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 손로는 1975년 1월 정수분부터 시행한다.
---	---

별표제 2 호

급 수 사 용 료 요 율 표

구 분 용 도 별		1 건 1 개 월 기본요금		초 과 사 용 료	
		기본수량(㎥)	기본요금(원)	사 용 구 분	당 단 가 (원)
가 사 용		15	225	16 - 30	25
				31 - 40	35
				41 - 50	45
				51 및 상	60
업 무 용	1 종	30	1,500	31 - 200 201 - 1,000 1,001 이상	80 110 160
	2 종	30	1,200	31 이상	50
	무 욕 량	갑 종	600	60,000	601 - 1,000
1,001-3,000 3,001 이상					200 250
을 종		600	15,000	601 이상	30
공 설 공 용		100	1,000	101 이상	10
특 수 용		사용수량 계당 35			
사 설 소 화 전		월 100원 (1년분율 1회에 정수할 수 있다)			
기 타		1. 사설 소화전의 연습 사용료는 특수용. 요율에 의한다 2. 일시급수 사용료는 사용수량 1㎥당 70원으로 한다			

<별표제3호>

급수 판 손료표

구 경 별	금 액
13 미 리	1 전 1 월 80 원
20 "	160 "
25 "	180 "
40 "	300 "
50 "	600 "
75 "	1,200 "
100 "	1,400 "
150 "	2,000 "
200 "	2,800 "

* 구정은 양수기 구정을 기준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
이제 공포한다.

1974년 11월 28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**춘**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416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중 "영업용"을
"업무용으로 한다.

제 16 조 제 1 항중 "별표제 1 호"를
"별표"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
같이 한다.

②조례제 3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
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
순위에 의한다.

1. 복욕탕 갑종
2. 업무용 제 1종
3. 업무용 제 2종
4. 복욕탕 을종
5. 가사용
6. 특수용
7. 공설공용

제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8조 (체납징수금 납부독촉과 강제
징수) ①급수사용자 등이 지정된
기한내에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납
입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별지제 1호
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
부터 1개월이내에 발부한다. 이 경우
조례제 34조의 가산금은 독촉장발부에
관재없이 납기한이 경과한때로부터
징수한다.

②전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
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징수처분 또는
지방세징수의 제에 따라 강제징수한다.

제 19조 제 1항중 " 제 3호서식 " 을 "
별지제 2 호서식 " 으로 하고 제 2 항

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
한다.

②급수사용자 등이 사용료 기타 징
수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을 때에
는 수납금융기관은 별지제 2 호서식의
영수증서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
납부자에게 교부하고, 수도사업소장
및 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
에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공무원
은 별지제 5 호서식에 의한 통화계산
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조례제 35조 제 2 항의 고지카-드
는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한다.
별표제 1호를 별표로 하고, 별지 제 2
호서식내지 제 4 호서식을 각각 별지
제 1 호서식내지 별지 제 3 호서식으로
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4년 12
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별표에 의한 급수용
및 구분표에 관한 사항은 1975년
1월 납기징수분부터 적용한다.


별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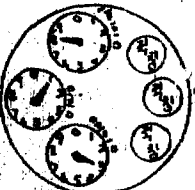
급 수 중 별 구 분 표

1. 가사용 : 시민주거용 급수, 다만 10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지량되는 급수물 사용할 때에는 사용 세대 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례 별표제 2호의 가사용 효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총량을 사용 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이 1㎡미만의 단수에 대하여서는 결산한다.

2. 업무용 1종 : 다음에 제기한 업체 및 이와 유사한 업체에 대한 급수

호	업 체	적 요
1	공 연 장	
2	숙 박 업 소	
3	금 용 기 관	보험회사, 신용금고등 포함
4	유용음식점·음식점	무수음식점 포함
5	다 과 점	
6	유 기 장 · 오 락 장	보링, 골프, 성구장포함
7	의 료 기 관	가속병원포함. 다만 사립대학부속병원은 제외한다.
8	시 장 및 백 화 점	종합상가, 아케이드, 슈퍼마켓, 연쇄상가포함.
9	이 미 용 업	
10	예 식 장	
11	수영장·실내스케이트장	개인풀장포함
12	세 탁 소	세탁기제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
13	인 쇄 소 · 활 판 소	인쇄기제시설이 없는 업체는 제외
14	한 중 막	
15	운 송 및 관 광 업	수차장, 광고 보관업 포함.
16	차 량 관 매 정 비	세차장, 검사장 포함.
17	화 계 · 식 목 업	
18	학 원 · 사 설 학 술 강 수 소	도서실, 체육관 포함.
19	칼 라 현 상 소 · 사 진 관	D.P.점 포함.
20	식 료 품 제 조 가 공 업	
21	도 살 장 · 장 육 점	
22	양 조 업 · 제 빙 업	
23	제 본 업 · 제 당 업	방앗간 포함.
24	청 량 음 료 제 조 업	

별지 제 1 호 서식 (권면)		독속장 및 납입필서		○ 납부장소 ① 상 업 은 행 ② 국 민 은 행 ③ 서 울 은 행 ④ 선 타 은 행 ⑤ 외 환 은 행 ⑥ 조 용 은 행 ⑦ 주 태 은 행 ⑧ 중 소 기 업 은 행 ⑨ 제 일 은 행 ⑩ 한 일 은 행 ⑪ 농 업 협 동 조 합 ⑫ 수 산 협 동 조 합 ⑬ 관 할 수 도 사 업 소	수 도 안 내
동대문구 3	수도요금	동대문구 3	수도요금		
주소	성명	주소	성명		
수전번호	업종	정리번호	정리번호		
년도	납기	금수사용료	용구손로	가산금	기 타
합 계		합 계			
		납부마감일 1975. 수입일부인 납부장소 (별지참조) 위와같이 고지			
		1975.  동대문구 수도사업소장			

(후면)		납입필통지서		※ 제랑기는 이렇게 붙입니다.  여기 제랑기 지첨수는 318입니다. ※ 수도사용량제랑은 이렇게 합니다. 금일지첨수 - 전일지첨수 = 금일사용량	
동대문구 3	영수증	동대문구 3	수도요금		
주소	성명	주소	성명		
수전번호	업종	정리번호	정리번호		
년도	납기	금수사용료	용구손로	가산금	기 타
위 금액 영수함 합 계		위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합 계			
은행 조합 지점		은행 조합 지점			
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		수입일부인			
		1975. 이금고 귀하			

별지 제 469 호							
공 회 계 산 서							
계 호	영 수 증						
주소·성명							
동 로 가 번 지 호							
귀 하							
수전번호	●	업 종	정리번호				
종 별	년 도	납 기	원 금	가 산 금	— 금		
금수사용료							
용구손료							
			합 계				
상기 금액을 영수함.							
197 년 월 일							
사 용 부 별 서				구 수 도 사 업 소			
본 입 수 일 원				인			